

## 주정차위반 단속 개시 구간 행정예고

파주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을 개시하고자,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6년 5월 19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취지 및 목적

파주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을 개시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### 2. 근 거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-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- 다. 「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」
- 라.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(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6. 5. 19.(화) ~ 2026. 6. 8.(월) (20일간)

4. 행정예고(공고) 방법 : 파주시 홈페이지

### 5. 단속시기 및 단속수단

- 단속기간: 2026. 6. 9.(화) ~ 계속
- 단속시간: 평일(09:00 ~ 21:00) / 주말·공휴일(09:00 ~ 18:00)

- 단속수단: 주행형CCTV, 안전신문고

## 6. 예외적용

6대 절대 주·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기존 유지

\* 소화전, 횡단보도, 버스정류소, 교차로 모퉁이, 인도(24시간 / 1분 이내 단속)

\* 어린이보호구역(평일 08:00 ~ 20:00 / 1분 이내 단속 / 주말·공휴일 제외)

## 7. 신규 단속 개시 구간

연번	주 소	비고
1	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41-33 인근(운정체육공원 일원)	
2	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83-6 일원	

※ [붙임 1] 신규 단속 구간 위치도 참조

## 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청 주차관리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 출 처 : 파주시청 주차관리과(파주시 시청로 51, 별관1층)

나. 제출방법 : 직접방문(평일), 우편 또는 팩스 (FAX 031-940-4789)

다. 제출양식 : 의견제출서 (붙임)

라. 제출기한 : 2026. 6. 8.(월)

마. 문의사항 : 파주시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(031-940-5969)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1. 신규 단속 개시 구간 위치도 1부.

2.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 1] 신규 단속 개시 구간 위치도

1.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41-33 인근(운정체육공원 일원)



2.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83-6 일원



## [붙임 2] 의견제출서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#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